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3시 45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주관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권행동 카라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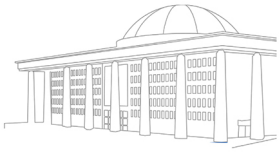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인사말 및 축사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1

박홍근(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중랑을 국회의원) ····· 3

주제발표

1. 동물학대자 동물 사육 국내 사례

윤성모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 5

2. 동물학대자 동물 사육 해외 사례

한민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21

지정토론

신수경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 41

유제범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47

임영조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54

박선덕 팀장(서울시 동물보호과) ····· 55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인사말

전 진 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존경하는 각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물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착취와 학대를 당하기 위해 태어난 동물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동물학대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도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동물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보도되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도 이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학대자의 동물사육을 금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할지라도 범죄를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이며, 동물의 피해와 고통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다면, 우리는 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우리 사회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육금지제도 입법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이 제도가 한국의 동물보호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토론회가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동물학대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전 진 경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축사

박 홍 근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입니다.

동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동물권행동 카라와 공동주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준비해주신 전진경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동물 학대 사건들로 인해 강아지들이 심각한 건강 상태로 발견되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자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와 지금의 위치가 크게 다르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막판에 사육금지제가 빠진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여전히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법의 보수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확대된 동물권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대의 변화에 법이 이렇게나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형사법 체계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법무부의 태도가 더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동물권행동 카라를 중심으로 한 동물보호단체와 국민들의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추진 의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사육금지제 도입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육금지제 도입은 단지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동물은 우리의 권리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토론회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6.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국회의원 **박 홍 근**

발제 1

동물학대자 동물 사육 국내 사례

윤성모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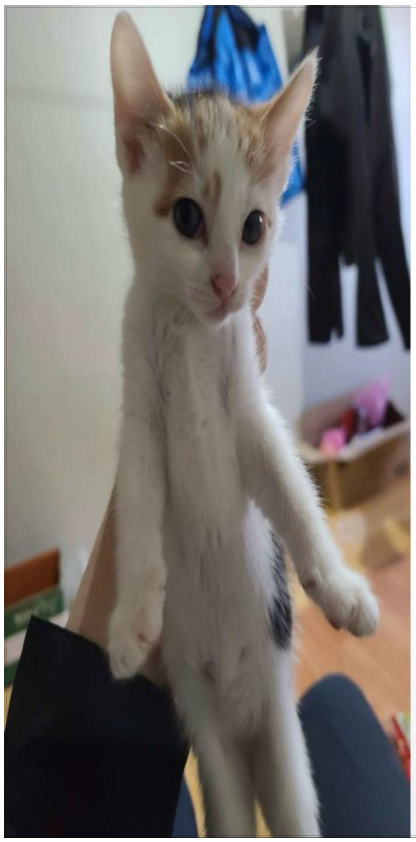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자 동물 사육 사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윤성모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2024년 9월 8일, 전남 무안군에서 발생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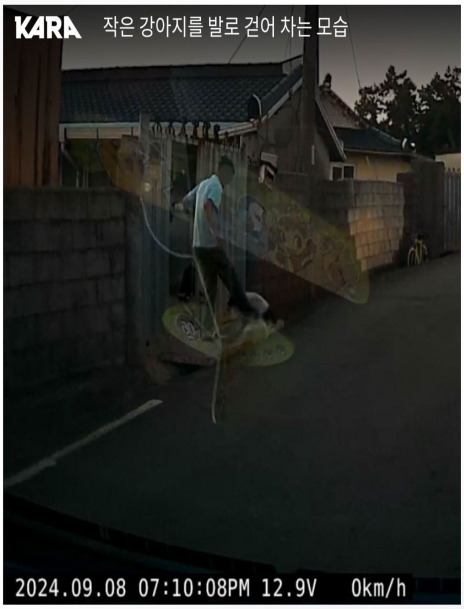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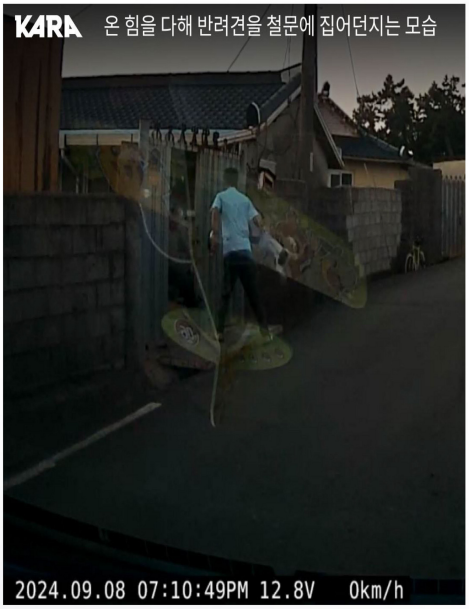

피학대동물을 긴급격리하고 **소유권 포기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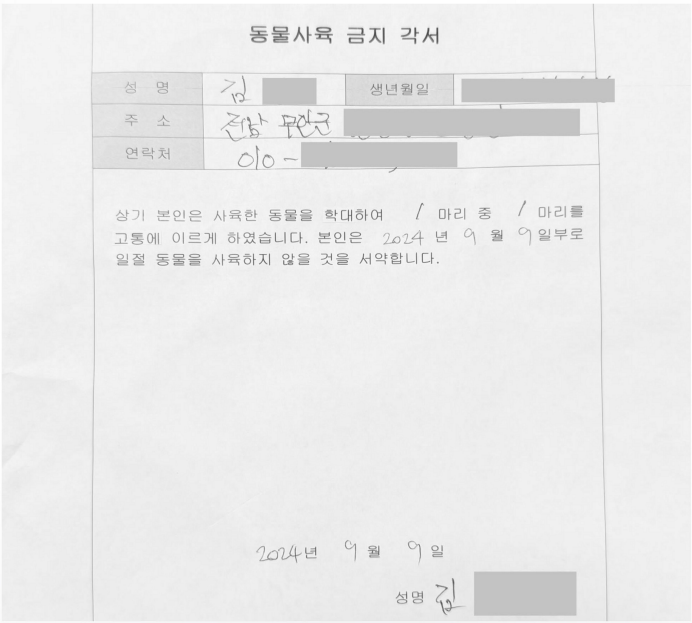

동물사육 금지 각서

성 명	김 [redacted]	생년월일	[redacted]
주 소	전남 무안군 [redacted]		
연락처	010 - [redacted]		

상기 본인은 사육한 동물을 학대하여 / 마리 중 / 마리를 고통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본인은 2024 년 9 월 9 일부로 일절 동물을 사육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9 월 9 일

성명 김 [redacted]

사육금지 각서도 직접 챙겨야 하는 실정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자 동물 사육 사례

1.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2. 김해 오피스텔 반려묘 학대 사건
3. 노원구 아파트 반려견 학대 사건

동물권행동 카라

사례1.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1 혐의

22년 1~2월 동안 길고양이 최소 6마리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며 죽음에 이르게 함
포획틀에 가둔 채 토치로 태워 죽임, 세탁기에 넣어 돌려 죽임, 꼬리를 잡고 바닥에 내려친 뒤 머리를 밟아 죽임, 죽인 고양이 사체를 훼손, 가죽을 벗겨 해부한 사진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시

2 선고

1심(22년 9월) : 징역 1년 4월, 벌금 2백
2심(23년 1월) : 징역 1년 4월 **집유** 2년, 벌금 2백

3 동물 사육 문제

23년 2월 시민 제보 : 길고양이 먹이 급여
23년 9월 시민 제보 : 고양이 실내 사육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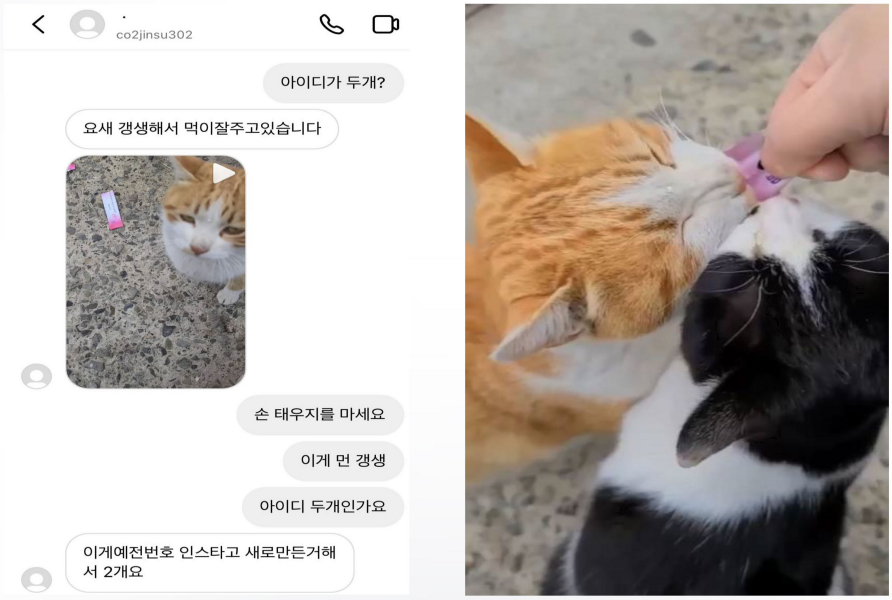

학대자가 **선고 받은 직후** 길고양이 먹이를 급여한다며 직접 촬영한 영상

동물권행동 카라

학대자가 **선고 받은 직후** 길고양이를 돌본다며 보내온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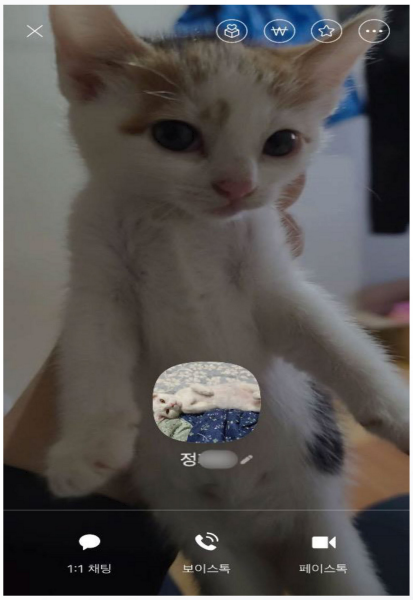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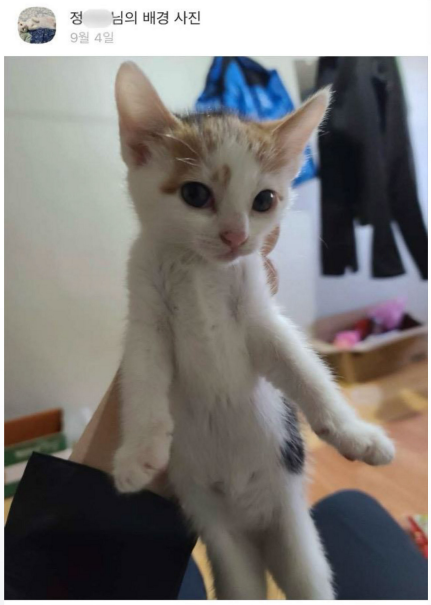

학대자 **선고 이후 확인된** 고양이 실내 사육 정황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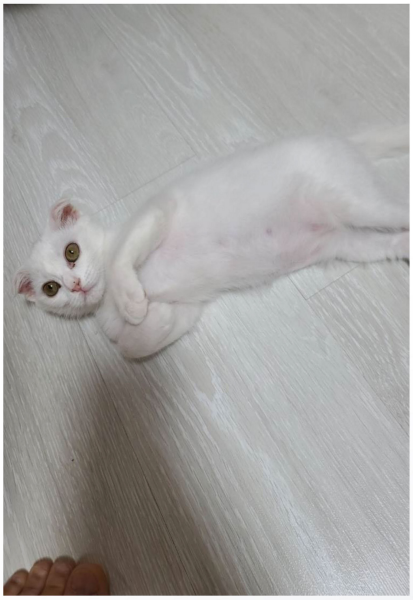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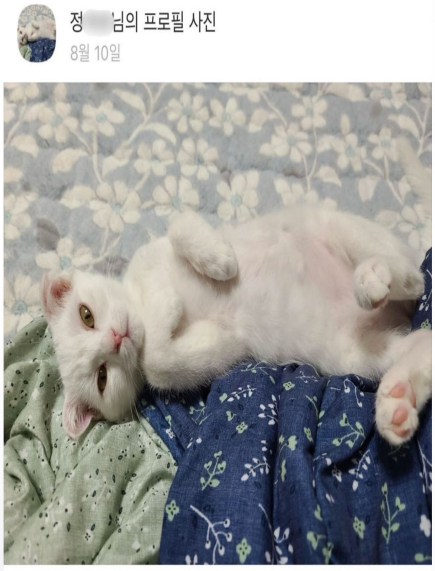

학대자 **선고 이후 확인된** 고양이 실내 사육 정황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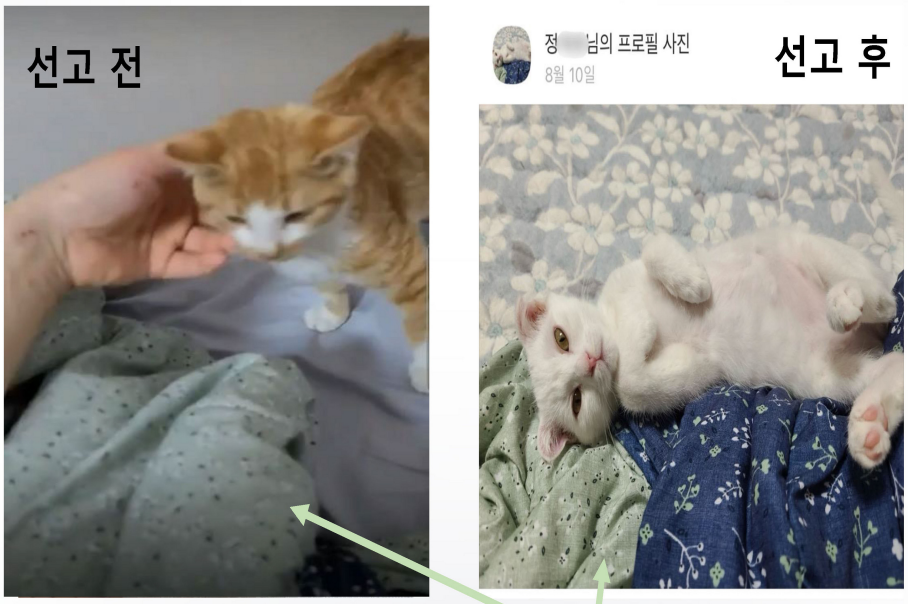

학대자가 촬영한 사진 속에서 동일한 **연녹색 이불** 확인됨

동물권행동 카라

포항 폐양어장 사건
학대자 사육금지 주요 논점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로 처벌 받아도
누구나 동물을 사육할 수 있음

동물권행동 카라

반려동물 외에도
길고양이에 접근, 사육 가능

동물권행동 카라

반려동물 외 동물에 대해서도 사육 금지 조치 필요

동물권행동 카라

사례2. 김해 오피스텔 반려묘 학대 사건

1 **혐의**

23년 6월, 거주 중이던 오피스텔의 12층에서
자신의 반려묘 2마리를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함

2 **선고**

징역 8월 **집유** 2년, 보호관찰,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예방교육 수강명령(선고일 24년 2월 7일)

3 **동물 사육 문제**

사건 전부터 고양이 6마리를 중성화 없이 사육 중이었으며
남은 4마리 중 2마리는 지인에게 입양보냈다 하고,
나머지 2마리에 대해선 계속 사육하고 있음(강한 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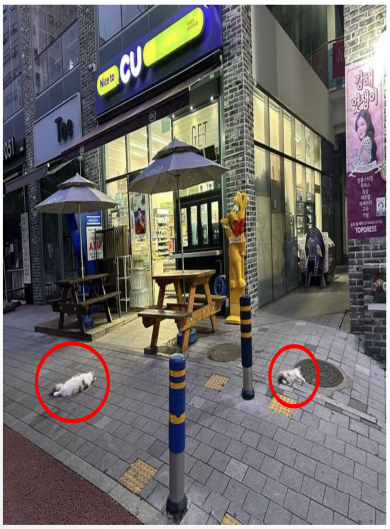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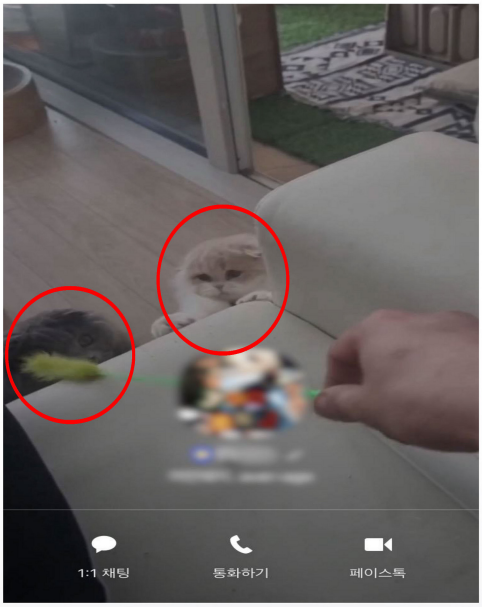

학대자 집에 남아 있는 반려묘

동물권행동 카라

김해 오피스텔 사건
학대자 사육금지 주요 논점

동물권행동 카라

남은 반려동물 보호 위한
구체적 법령, 제도적 장치 전무

동물권행동 카라

사육금지 명령 내려질 경우
이전부터 반려하던 동물에게도 적용 필요

동물권행동 카라

사례3. 노원구 아파트 반려견 학대 사건

1 **혐의**

23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 여성과 다툼 중에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함

2 **선고**

징역 8월 **집유** 2년, 40시간 동물학대 예방교육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선고일 24년 8월 23일)
*검찰 항소로 2심 예정

3 **동물 사육 문제**

반려견 총 2마리였고 **반려견 1마리 남아있음**
노원구청에서 긴급격리 조치했었으나, 남녀 더이상 동거 안하기로 한 조건으로 여성 측에 되돌려 보냄
***남녀 별거 여부 확인 어려움**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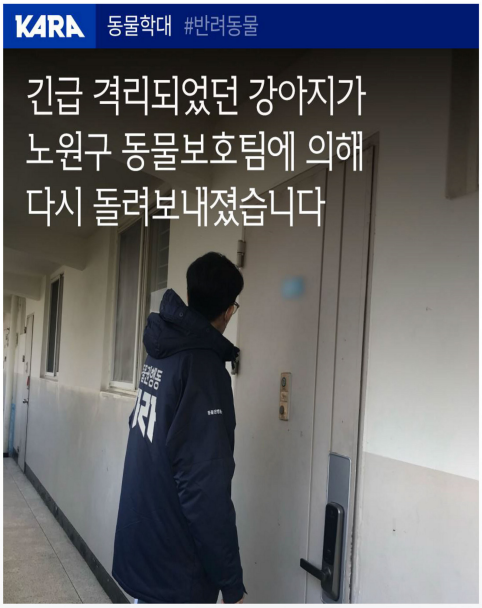

학대자의 **동거 여성에게 보호자 등록처리 후** 강아지 돌려보냄

동물권행동 카라

노원구 아파트 사건
학대자 사육금지 주요 논점

동물권행동 카라

학대자 사육권 제한한다 해도
동거인의 반려동물에 접근할 수 있음

동물권행동 카라

학대자 가족 또는 동거인의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대책 절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논점 요약

포항 사건

길고양이에게 마음대로 접근하고 먹이를 주며 사육 가능

김해 사건

사건 **이전부터 반려하던 동물**에 대한 학대 위험

노원 사건

동거인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위험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제 이제는 도입해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발제 2

동물학대자 동물 사육 해외 사례

한민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2024.9.26.(목).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해외 사례

발표자 한민지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본 발제자료는 "한민지(2023.2),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1호"와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2022.11.),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에서 발제한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목차

한국법제연구원 | 2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Ⅲ. 해외 유사 사례

Ⅳ. 시사점과 향후 고려사항

I

들어가며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들어가며

01 언제부터 인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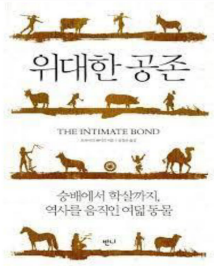

인간과 동물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였다.
지배와 피지배는 인간이 온갖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관계다.
(위대한공존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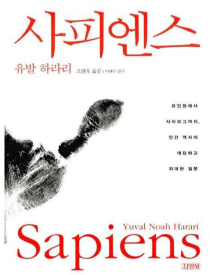

농업 혁명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 간의 관계를 급격히 변화시켰다.
이전에는 ***인간과 동물이 대체로 평등한 관계였으나,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인간은 소, 양, 닭 등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동물은 인간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전락했다.
(사피엔스 中)

들어가며

01 언제부터 인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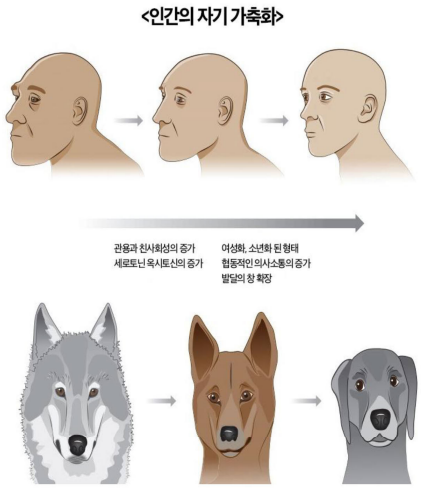

- 인간이 나무 위에서 내려와 걷기 시작하고 사회를 이루면서 개, 고양이, 양, 소, 말 등 다양한 야생 동물들을 길들여 가축화시켜왔다. 그런데 그런 길들이기, ***가축화의 가장 오래된 대상은 다름 아닌 '인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현생인류가 이전 영장류 조상과 완전히 다른 것은 자기길들이기(self-domestication) 때문'이라는 주장이 생물학계에서는 끊임없이 나왔었다. **자기길들이기, 또는 자기사육화는 인간이 스스로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에 맞춰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현생인류가 인류의 조상들보다 덜 공격적이고 더 협동적이며 사회적이라는 것이 자기길들이기의 대표적 증거***라는 설명이다.

출처: [달콤한 사이언스] 인류가 가장 먼저 가축화한 것은 다름아닌 '사람'

들어가며

02 동물학대의 지속과 대응방안 마련 요구 증가

이번 연구를 주도한 주세페 테스타 이탈리아 밀라노대 교수(분자생물학)는 "동물의 가축화와 인간의 자기가축화는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인류가 협동사회를 유지하면서 ***외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를 와해시키는 공격성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지만 동물의 가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달콤한 사이언스] 인류가 가장 먼저 가축화한 것은 다름아닌 '사람'

들어가며

02 동물학대의 지속과 대응방안 마련 요구 증가

출처: 구글 키워드 "동물학대", 2024.9.1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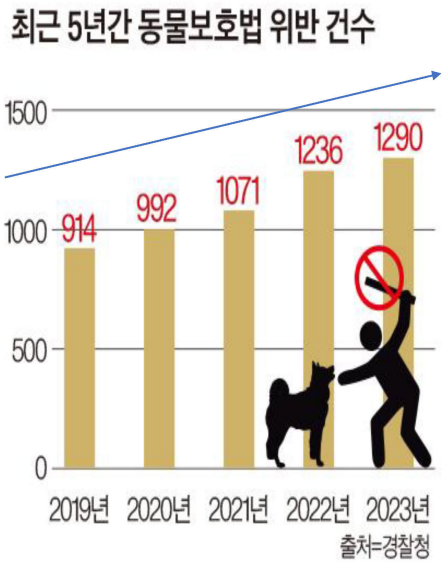

출처: 법률신문, 2024.9.11.일자, "반려동물의 비명 "

II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01 동물보호법의 변화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주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2. 4.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022. 4. 26.)	원안가결 (2022. 4. 5.)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2022. 3. 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상정 (2022. 8. 23.)		211499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2022. 1.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회부 (2022. 1. 28.)		211459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2021. 11. 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회부 (2021. 11. 24.)		21134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2021. 11. 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3402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2021. 11. 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3391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21. 11.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3368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2021. 11.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회부 (2021. 11. 18.)		21133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남의원 등 10인 (2021. 11.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3179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현의원 등 12인 (2021. 11.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3064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길의원 등 11인 (2021. 10. 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2899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석의원 등 10인 (2021. 10. 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2839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근의원 등 55인 (2021. 9. 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2757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주의원 등 11인 (2021. 9. 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2564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덕홍의원 등 10인 (2021. 9. 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회부 (2021. 9. 15.)		21125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철의원 등 10인 (2021. 8. 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2337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준호의원 등 11인 (2021. 8. 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회부 (2021. 8. 26.)		21122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민국의원 등 10인 (2021. 8.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1996 (2115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민국의원 등 10인 (2021. 8.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1971 (2115073)

- 2022.4.26.,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제18853호) 공포(2023.4.27 시행)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일치된 의견 존재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01 동물보호법의 변화

동물보호관련 제도 개선

01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중략>***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것임.

02 실효성 보장

사육금지(가)처분

- 동물보호법 의 근거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금지하도록하는조치
-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학대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분

추가 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동물사육금지처분은 미도입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01 동물보호법의 변화

동물보호관련 제도 개선

↓

실효성 보장

사육금지(가)처분

반대근거

- 장래 위험 예방과 동물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은 인정
- 그러나 피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며,
- 사육금지가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에 따라
-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를 위한 실효적 기반 마련에 대한 의문 지속적 제기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02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핵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상위법인
법률에 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

제2조(정의)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의조항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모두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는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과 상해로 한정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03 동물학대와 연계된 개별 규정(대책)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폐쇄
- 명예동물보호관의 결격사유

→ 동물사육 및 보호 등에 대한 **질적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책임있는 동물사육 (및 반려동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유도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04 동물학대와 사육금지처분 필요성

학대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사후조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동물의 반환규정에 따라 피학대 동물은 다시 동물학대자에게!

→ 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개정)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05 동물학대와 사육금지처분 도입(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55인 (2021. 9. 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대안반영폐기 (2021. 12. 3.)	2112757 (2115073)

제11조(동물사육금지처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등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사육금지처분

05 동물학대와 사육금지처분 도입(안) : 21~22대 국회 법안 발의

회기	21대			22대
구분	윤미향 의원안 ('23.1.30., 의안번호: 19703)	태영호 의원안 ('23.4.14., 의안번호: 21374)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안 ('24.1.12., 의안번호: 26269)	박홍근 의원안 ('24.9.5., 의안번호:3700)
대상 동물	반려동물	동물		
금지 대상 행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제5항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제4항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행위 (동물학대범죄 공소제기)	
청구권자	지자체장 및 검사		검사	
처분 주체	법원			
처분 방법	유죄판결과 함께 병과			
금지 행위	사육		사육, 관리, 보호	
사육금지 기간	5년 이내	5년 이내	1년 이상 5년 이하	
가처분	가능		가능 (3개월 이내 임사사육금지 처분형태)	

21대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사육금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
사육금지제도 도입 방안(처분 주체, 방법,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 마련 필요

Ⅲ

해외 사례 (유사입법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해외 사례(유사입법례)

01 개관(현황)

-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테네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호주 일부 주(퀸즈랜드, 뉴사우스 웨일 등), 캐나다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육금지처분을 명문화하고 있는 상황

세부 규정 예시

구분	대상	범죄 행위	금지 행위	대상 동물	금지 기간
독일	유죄판결 받은 자 또는 책임무능력(추정 포함)으로 인한 유죄판결 받지 아니한 자	동물학대행위	사육, 돌봄 또는 영리행위	모든 동물 또는 특정 종류의 동물	1년~5년 또는 영구적
호주 퀸즐랜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동물 학대행위	사육, 돌봄 또는 영리행위	모든 동물 또는 특정 종류의 동물	영구 또는 특정기간
캘리포니아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동물학대행위	사육, 돌봄	모든 동물	5년간

중점사항

- 사육금지와 연계된 ***"학대행위"에 대한 검토***와 법원의 ***유죄판결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해외 사례(유사입법례)

02 무엇이 학대인가?(독일사례)

동물보호법 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척추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인 자.
2. 척추동물에게

a) 잔혹하게 심한 통증 또는 괴로움을 유발한 자.
b)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심한 통증 또는 괴로움을 유발한 자.

처벌대상

동물을 죽이거나	통증을 유발하거나	괴로움을 유발한 자.

해외 사례(유사입법례)

02 무엇이 학대인가?(독일사례)

통증을 유발하거나

- 실제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불쾌한 감각 및 감정적 경험
- **잠재적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및 감정적 경험까지도 포함**
- 즉, 직접적인 신체 손상 없이도 통증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괴로움을 유발하거나

- 통증에 포함되지 않은 안녕에 대한 침해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
- 동물의 본성과 본능에 반하고, 자기보존과 종보존 본능에 대항하여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상황등을 야기하고 동물 스스로에 대한 안녕에 침해를 유발하는 것
- 주관적 인식이나 감각이 개입한 지각의 영역으로 **신체적인 건강과 안녕을 넘어 정신적 불편함 또는 부정적인 상태에 이르는 행위**를 아우름

해외 사례(유사입법례)

02 무엇이 학대인가?(독일사례)

[독일 헌법재판소]
성폭행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안녕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법 제20a조에 따른 동물보호목표에 부합하는 것임에 따라 해당 규정은 합헌이다.
(1BvB 1864/14, Rn. 1-15.)

신체적인 고통과 상해뿐만 아니라 „싫다“라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이
성적대상화가 되어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법이 고려하고 보호하고 있음.

해외 사례(유사입법례)

02 무엇이 학대인가?(독일사례)

물리적 신체적 침해와 학대를 넘어 정신적 학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동물에게 불합리하게 가해지는 상해,
통증과 스트레스 유발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됨을 뜻함.

처벌대상

동물을 죽이거나 | 통증을 유발하거나 | 괴로움을 유발한 자.

우리나라에서 정의조항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모두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제 금지되어 처벌되는 행위는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과 상해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차이

구분	대상	범죄 행위	금지 행위	대상 동물	금지 기간
한국	유죄판결 받은 자	동물학대행위?	-	-	-

해외 사례(유사입법례)

03 판결시 고려사항?(1) 독일사례

「동물보호법」 제20조
(1) 동법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이를 배제할 수 없어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가 동법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계속 지속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인에게 1년에서 최대 5년의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 또는 정해진 종에 대한 사육, 돌봄 또는 그밖에 영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해당 금지명령은 판결 또는 형의 확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범인의 구금일수는 금지명령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 금지명령 이후 범인이 동법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소 6개월의 금지명령이 이행된 이후에 금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위험의 판단 (재범위험과 처분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음)

-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그 자의 향후 범죄행위 사이에는 개연성이 필요하고, 매우 높은 정도의 개연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함.
-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행위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동물보호금지처분을 명할 수 없음.

해외 사례(유사입법례)

03 판결시 고려사항?(2) 호주 퀸즈랜드 사례

동물의 돌봄과 관리에 관한 법 2001
제185조
제2항 법원은 사육금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위반의 성격
(2) 위반 행위가 해당 동물 또는 위반행위에 사용된 동물에게 미친 영향
(3) 해당 동물과 당해인이 소유한 다른 동물들의 복지
(4) 당해인이 또 다른 동물복지금지행위를 위반할 가능성
(5) 당해인에 사육금지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처분의 준수 여부
제3항 법원은 제2항에 열거된 사항 외의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

사육금지처분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판결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형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유 또한 판결시 고려가능하도록 판결재량을 인정하고 있음
- 위반행위와 사육금지처분을 곧바로 연계하고 있지 않으며, 장래위험 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사례(유사입법례)

03 판결시 고려사항?

「동물보호법」 제20조
(1) 동법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이를 배제할 수 없어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가 동법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계속 지속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인에게 1년에서 최대 5년의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 또는 정해진 종에 대한 사육, 돌봄 또는 그밖에 영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해당 금지명령은 판결 또는 형의 확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법인의 구금일수는 금지명령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 금지명령 이후 법인이 동법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소 6개월의 금지명령이 이행된 이후에 금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의 돌봄과 관리에 관한 법 2001
제185조
제2항 법원은 사육금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위반의 성격
(2) 위반 행위가 해당 동물 또는 위반행위에 사용된 동물에게 미친 영향
(3) 해당 동물과 당해인이 소유한 다른 동물들의 복지
(4) 당해인이 또 다른 동물복지금지행위를 위반할 가능성
(5) 당해인에 사육금지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처분의 준수 여부
제3항 법원은 제2항에 열거된 사항 외의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

**사육금지처분은 동물보호라는 목적을 훼손할만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부과하고,
행위사실과 장래행위에 대한 개연성을 고려하여 판결시에 행위자에 대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동물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등을 긍정받기 위해서 그 내용과 절차 및 과정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

해외 사례(유사입법례)

03 판결시 고려사항?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동물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등을 긍정받기 위해서 그 내용과 절차 및 과정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

반대의견

위험예상과 관련하여 재범위험성을 명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합헌.

박홍근의원안은 동물사육금지처분과 유죄판결을 곧바로 연결하고 있지 않음.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으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5헌바196 · 222 · 343(병합) 결정/소수의견)

참고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연령, 가족관계,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회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791, 판결)

구분	대상	범죄 행위	금지 행위	대상 동물	금지 기간
한국	유죄판결 받은 자?	동물학대행위	-	-	-

Ⅳ

시사점 및 향후 고려사항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시사점 및 향후 고려사항

01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대와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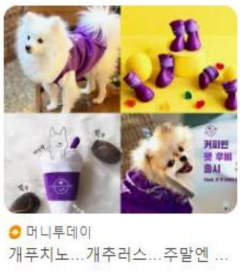

해외 동물학대 예시

출처: 구글 갈무리

학대, 방임, 인간화, 고문(테러 강압) 절단 , 상해, 수간, 동물실험, 본성에 반하는 번식, 서커스, 애니멀 호딩 등

- 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 사육금지처분과 연계되는 학대행위에 대한 검토 요청
  (단, 범죄자 양산 우려 등의 측면에서 학대행위의 확대와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 상기할 필요)
- 사육금지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 주요 학대행위를 달리 규정하는 것 또한 검토 가능

시사점 및 향후 고려사항

02 사육금지처분 효과와 관련하여

- 동물사육금지처분은 대상에 따라 심리적 타격과 법적 효능감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
- 동물을 사육하지 않는 자가 행한 동물학대행위를 고려하여 심리치료, 교육 등 예방적 수단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지정토론

토론문

신수경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유제범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임영조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박선덕 팀장(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관련 법적 제언

PEOPLE FOR NON-HUMAN RIGHTS

© 2024 법률사무소 율다함.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신수경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동물학대자

◆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상의 동물학대

"동물학대" 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동물보호법 제10조상 금지(처벌)되는 동물학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상해 등을 입히는 행위,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판매 등, 소유자의 동물 유기행위, 위생건강관리 위반 등 방임행위, 학대 촬영, 게재 등, 동물 이용 도박, 경품 등으로 제공, 영리목적 대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는 행위들?

PEOPLE FOR NON-HUMAN RIGHTS

© 2024 법률사무소 율다함. All Rights Reserved.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동물학대자

◆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하였지만, 형사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자

신고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사 진행 결과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된 경우

기소유예 지양? **동물권 관련 교육 이수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처분에 그친 자

동물보호법상 과태료는 동물실험, 동물관련 영업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

형사사건 결과와 달리 관할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영업허가, 등록 등에 있어 기소유예 종결 사안보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보다 쉽게 반영 가능

PEOPLE FOR NON-HUMAN RIGHTS

© 2024 법률사무소 율다함. All Rights Reserved.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사육금지

◆ 소유의 제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는 방식

기간적 요건

- **영구적인 제한**
- **일정 기간 동안 제한**

대상적 요건

- **범행당시 / 선고 당시 소유동물**
- **향후 정해진 기간(영구)동안 모든(또는 특정) 동물의 소유제한**

조건부가 요건

- **소유 마리 수 / 사육 환경의 제한 (동물보호법상의 요건보다 가중)**
- **교육이수 조건부 제한**

PEOPLE FOR NON-HUMAN RIGHTS

© 2024 법률사무소 율다함. All Rights Reserved.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사육금지

◆ 영업의 제한

동물학대자의 직업 / 영업에 대하여 제한하는 방식

기간적 요건

- 영구적인 제한
- 일정 기간 동안 제한

영업범위 등 내용상 제한

- 영업가능한 업종 제한 / 영업 범위(사육두수 등) 제한
- 교육이수 조건부 제한

PEOPLE FOR NON-HUMAN RIGHTS

© 2024 법률사무소 율다함. All Rights Reserved.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사육금지 명령

◆ 동물 사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자격 요건 도입

- 자격요건(시험통과, 사육환경 관련 **확인, 교육이수 등)을 통과한 자에게 사육을 허가하는 방식 : 동물학대 전력을 허가 등 과정에서 스크리닝.**

ex) 아동 입양 : 민법상 입양(가정법원의 허가)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의 조사 및 심사)

관련 입법안 : 임병헌 의원안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관할 업무

PEOPLE FOR NON-HUMAN RIGHTS

© 2024 법률사무소 율다함. All Rights Reserved.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사육금지 명령

◆ 동물 사육 일반을 제한하는 방식 (태영호 의원안)

-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의 소유를 금지하는 방식
- 동물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동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는 영업도 금지되게 됨 (단,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가능**)
-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제한 관련 논쟁이 발생**
- **영구제한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
- **소유의 일반적 제한의 경우, 현행 법제도 하에서 반려동물의 입양을 정부가 완전히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법원의 판결로 가능?
: 소유제한 기간 명시, 판결 선고시 보호관찰 부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준수사항 부과하는 방식?

PEOPLE FOR NON-HUMAN RIGHTS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사육금지 명령

◆ 동물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동물관련업을 제한하는 방식 (김영주 의원안)

-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관련 업무를 금지하는 방식
-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제한 관련 논쟁이 발생**
- **영구제한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
- **동물관련 기관 중 정부가 관리하고 있거나 임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 가능,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학대 전력자를 확인하여 취업을 제한할 수 있음.**

ex)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취업제한 제도(매해 점검의무)

법원 판결로서 취업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PEOPLE FOR NON-HUMAN RIGHTS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사육금지 명령

♦ 동물관련 키관에 취업 또는 동물관련업을 제한하는 방식 (김영주 의원안)

-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관련 업무를 금지하는 방식
-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제한 관련 논쟁이 발생**
- **영구제한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
- **동물관련 기관 중 정부가 관리하고 있거나 임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 가능,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학대 전력자를 확인하여 취업을 제한할 수 있음.**

ex)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취업제한 제도(매해 점검의무)

PEOPLE FOR NON-HUMAN RIGHTS

© 2024

법원 판결로서 취업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사육금지 명령

♦ (기존)동물의 소유권을 제한, 박탈하는 방식 (정청래 의원안)

- 동물학대자가 범행 당시 또는 선고시에 소유하고 있는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방식
- **재산권, 행복추구권 관련 논쟁이 발생**
- **소유권이 박탈된 동물의 사육, 돌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ex) 아동복지법, 민법 등의 친권 박탈과 제한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시설 등에 위탁)

별도의 소유권 박탈 신청 후 법원 판결 / 몰수 선고 유사로 형사판결 선고시에 / 소유권 박탈된 동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관리

PEOPLE FOR NON-HUMAN RIGHTS

© 2024 법률사무소 율다함. All Rights Reserved.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관련 법적 제언

PEOPLE FOR NON-HUMAN RIGHTS

결어

◆ 동물학대자 범위 확정
: 법률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많은 경우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논의가 필요함.

◆ 사육금지의 범위 확정
: 영구적인 제한은 위헌적인 소지가 명확하므로, 기간과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소유제한과 취업제한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함.

◆ 사육금지 명령의 방식
: 법원의 판결로서 행하는 것이 위헌적인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고, 영구적인 금지가 아닌 동물학대자의 성행, 학대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건 마다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한편, 소유 제한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 법률사무소 울다함. All Rights Reserved.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PEOPLE FOR NON-HUMAN RIGHTS

© 2024 법률사무소 울다함. All Rights Reserved.

사육금지제의 개인 자유 침해 관련 쟁점 및 입법 방향

유제범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주요 입법 내용과 한계, 제도 도입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91년 5월 31일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점차 강화되어 왔고,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거나 동물학대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등의 제도도 마련되었음

○ 1991년 5월 31일 「동물보호법」이 제정(시행 1991.7.1.)된 이후 현재까지 총 32차례 법률이 개정(타법개정 포함)되었는데, 1991년 5월 31일 「동물보호법」 제정 당시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24년 1월 2일 개정 법률(시행 2025.1.3. 법률 제19880호)에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됨

○ 이 외에도 피학대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소유권 취득 강화(제43조), 사육포기 피학대동물의 인수제(제44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권고(제89조), 동물학대자(유죄판결 선고)에 대한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제(제100조) 등도 도입됨

□ 그리고 최근에는 동물학대 방지 뿐만 아니라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동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제21대 국회에서는 동물을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독일 등 해외사례와 같이 「민법」 등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것'으로 개정하려는 법안[1]과 함께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려는 입법적 논의도 있었음(임기만료로 폐기됨)[2]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1.3.24.) 등
2)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개최-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2021.4.15.

○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2.6., 시행 2024.08.07.)되었음

○ 2018년 개헌 논의과정에서도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동물에 대한 사회인식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수가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여전히 동물학대죄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학대행위의 유형도 다양화, 잔혹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동물학대 및 살해 행위를 사이버 공간에서 즐기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 2012~2020년까지 9년간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2.6.22.)]을 살펴보면, 2012년 159건에서 2020년 1,149건으로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함

※ 동기간 총 4,637건의 위반 사건이 접수되어 그 중 총 4,505건이 처리되었는데, 처리 건수 중 기소는 1,627건, 불기소는 2,781건, 기타(보호사건송치 등)는 97건이었음

※ '동물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 2015~2019년 기간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총 238건(미검거 34건)에서 2019년 총 914건(미검거 19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구속인원은 5년간 총 4명에 불과함

- 미검거율은 2015년 14.3%에서 2019년 20.9%로 5년간 6.6%p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동물학대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동물은 사람과 달라 학대행위를 증명하거나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한계가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미국 등 해외의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동물학대자의 동물학대행위와 다른 범죄(약물, 난동, 재산,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연쇄살인 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당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물학대 범죄를 더 이상 단순히 동물 대상 범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3)]

○ 동물학대자의 상기와 같은 다른 범죄 경험이 상대적으로 3.5배 더 높게 나타남

3) 김현지, 「동물학대의 최신 사례와 추이 및 동물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나아갈 길」,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동물복지국회포럼·동물권행동 카라, 2020.11.5.; 박주연, 「동물학대 사건의 국내 처벌 현황과 해외동향」,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동물복지국회포럼·동물권행동 카라, 2020.11.5. 등

○ 동물살해범과 강력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확인되고 있음

□ 이처럼 1991년「동물보호법」제정 이후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주요 입법 수단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잔인해지고 있으며, 더불어 동물학대행위가 동일인에 의해 반복성도 띄고 있어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도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료됨

□ 한편 최근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4.9.5.)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임

※ 주요 내용: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및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등)

○ 이와 유사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대표발의, 2024.1.12.)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9.30.)

2. 사육금지제의 개인 자유 침해 문제와 입법 방향

□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도입의 경우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반려동물 사육제한, 관련 영업장으로의 취업제한 등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소유권·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고, 결국 해당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함

※ 동물학대자에 대한 피학대 동물 소유권 제한, 동물 사육권 제한 등에 관하여는 이전 국회(18대 국회)에서도 입법적 논의가 있었으나, 기본권 침해 등의 사유로 입법되지 못함

□ 따라서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도 도입의 쟁점은 사육금지제도가 우리 헌법에서 비롯된 입법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볼 수 있음

〈표〉 유사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제21대 국회)

	발의의원 (의안번호, 발의일자)	주요 내용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의 주요 내용
1	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2284호, 2023.5.25.)	**사육·관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반려견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일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려견 소유 자격제한을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홍보 등을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374호, 2023.4.14.)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도입	- 법무부: 동물사육금지처분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고, 많은 유사 입법례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법적 제재이므로 충분한 학계 논의 필요 - 법원행정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처분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요건, 불복절차 등에 대한 보완·검토 필요
3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012호, 2022.12.22.)	**동물학대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3회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	-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학대행위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동물학대 행위자를 일률적으로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해당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영업장 취

	발의의원 (의안번호, 발의일자)	주요 내용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의 주요 내용
			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죄의 경중 등과 무관한 일률적 제재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성범죄자 취업 제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상 결격사유 등에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없이 일률적으로 특정범죄전력자를 장기간 취업에서 차단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
4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2827호, 2020.8.7.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 법제처는 피학대 동물의 격리와 관련하여 '필요적' 격리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임의적' 격리조치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과잉금지원칙은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함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함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 제한의 방법을 입법적으로 택할 때에도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낮은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본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1)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제한하고, 2) 기본권 제한의 인적·물적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3) 다른 제도와 비교해서 기본권 제한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4) 획일적인 기본권 제한보다는 사안별로 차등하여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육금지제도가 사육금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공익: 公益)과 기본권 제한이라는 사익(私益)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거나 공익이 현격히 큰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여기서 사육금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란 동물학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 방지, 다수에게 해당되는 일종의 행복추구권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공익이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라는 기본권 제한 정도와 비교해서 비례관계에 있는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익이 현격히 큰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는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둘째, 사육금지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자의 위반행위 정도, 금지 기간, 심리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른 금지 행위 중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사육금지 기간을 위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안, 심리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사후적인 사육금지제도 도입이라는 기본권 제한 방안 이전에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독일의 니더작센주의 사례와 같이 '반려동물 사육자격 시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학대행위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소양이나 심리검사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 니더작센주는 2013년부터 견종에 상관없이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해야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음

- 이 방안은 동물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문제 등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동물보호법」 이나 「형법」 등에서 동물학대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동물의 소유·매매·접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 상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거나, 「민법」 상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이에 다른 국가들의 동물사육제한 제도를 곧바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국내 법체계적인 측면을 고려할때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향후 개헌 논의 시에 2018년 논의되었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회법제사위원회에는 「민법」 개정안(박홍근 의원안, 박승희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음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추진 가능성

임영조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MEMO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제도의 한계 및 사육금지제 도입의 필요성 제고

박선덕 팀장(서울시 동물보호과)

□ 피학대동물 격리절차

○ 피학대동물 :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 학대의 범위에 상해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도 포함시킴으로써 의미 확장

〈동물학대사건 발생 시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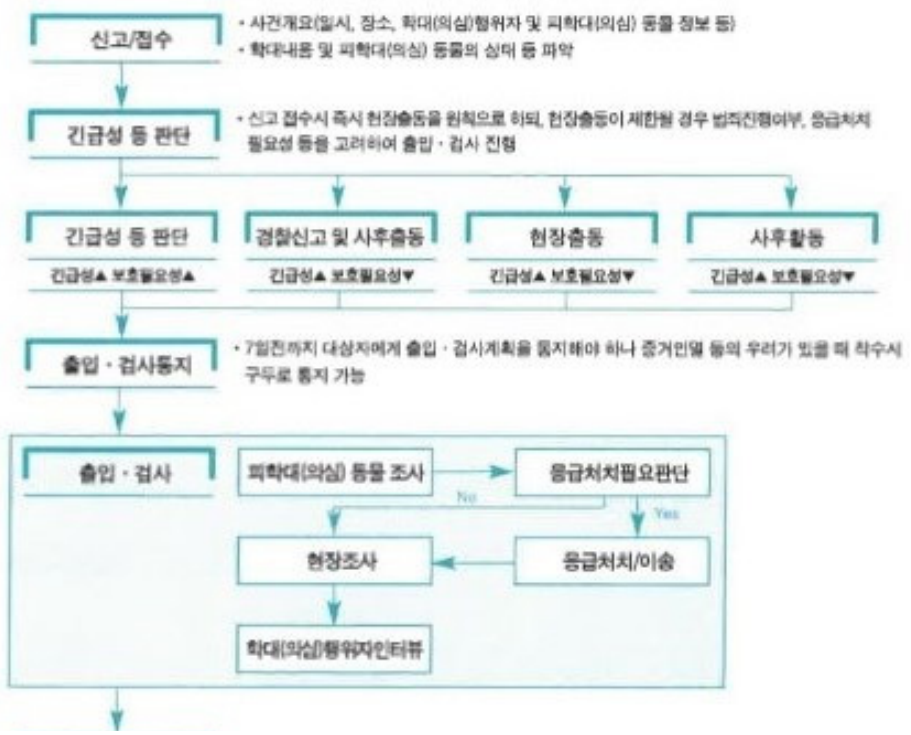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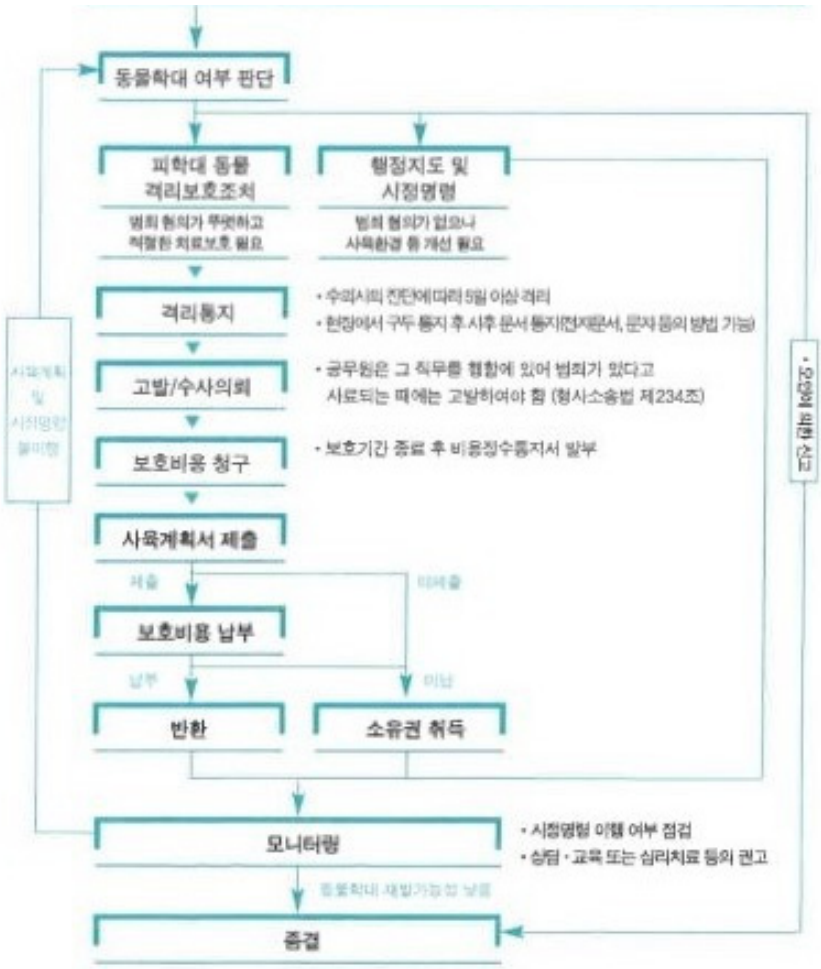

○ **피학대동물 격리절차** : 동물학대여부 판단 ≫ 피학대동물 격리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5일 이상 보호) ≫ 보호비용 청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 보호비용(수의사의 진단 · 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 등) 납부 및 사육계획서 제출 →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자치구로 귀속 → 입양 or 기증 (요청 시 동물보호 민간단체 우선 기증)

□ 긴급격리 제도의 한계

○ 소유자(학대혐의자)가 절차를 이행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함

- 피학대동물 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고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면 반환해야 함 (동물보호법 제41조)

○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절차 지연

- 소유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및 가처분 신청 후 인용되는 경우 동물을 일단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 발생

○ 법원에서 긴급격리와 행위자 처벌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있음

-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처분 가처분 및 학대자 처벌이 각각 따로 이루어짐

〈마포구 야생동물 카페업주 돌망치 사건〉

- 마포구 야생동물 카페업주가 개를 돌망치로 10여 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 (다른 개와 킹카쥬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
- 2022.11.30. : 긴급격리 (동물카페에서 체험 먹이주기 등에 동원됐던 개7마리, 고양이 10마리를 피학대동물로 판단 긴급격리)
- 2023.2.7. : 소유자 서울행정법원에 긴급격리 가처분 신청 인용됨. 소유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인 반면 처분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긴급격리의 집행중지 결정으로 법원의 반환명령.
- 2023.6. : 마포구 항고가 기각됨
- 2023.7. : 마포구 재항고
- 2023.5.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징역10월 벌금 500만원 판결
  - 검찰구형 : 징역2년2월 벌금 300만원
  - 2월에 구속된 피고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호중인 동물을 다시 데려가려 함
- 2023.10.16. : 항소심에서 1 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항소 기각

□ 사육금지제 도입 필요성

○ 피학대동물 긴급격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 현재는 긴급격리제도가 학대당사자의 처벌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유권 요구 가능성 상존

- 사육금지제 도입 시 법원에서 긴급격리와 학대관련 처벌에 대하여 이원화하여 판결하기 보다는 일원화 하여 판결할 개연성이 높음

○ 다른 동물 입양 및 학대가능성 방지

- 현재는 피학대동물 포기 후 다른 동물을 입양, 반복하여 학대 가능성 높아짐

- 사육금지제 도입 시 계속 반복되는 격리절차로 인한 부정적 고리를 끊을 수 있음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